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[별지 제22호의3서식] <개정 2021. 6. 30.>

보조기기(개인용 음성증폭기·보청기) 처방전

※ 뒤쪽의 유의사	사항을 읽	고 작성해 주	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	티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	- }.		(앞쪽)	
[] 장애인	등록 전	<u> </u>						
① 진료받은 사람		성명		주민(외국인)등록	주민(외국인)등록번호			
		집 전화번호		휴대전화번호	(, , _ , _ , _ ,)			
② 장애 구분		장애유형(주장애) 중복장애유형(부장애)		이	애 []심하지 않은 장애 정 []심한 장애			
③ 처방 보조기기		[] 개인용 음성증폭기 [] 보청기 [] 우 [] 좌						
			구분			해당	여부	
④ 확인사항	체외용	체외용 인공후두 후두 전적출술 여부]	
	보청기	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. 고막 및 바깥귀길 상태 검사상 보청기 착용이 가능하다.				우[]] 좌[]	
			평균 순음청력역치 ※ 6분법[(a+2b+2c+d)/6]에 따라 계산합니다. 이 경우 a는 검사 500Hz, b는 1000Hz, c는 2000Hz, d는 4000Hz입니다.				좌[]dB	
		결과 말소리 명료도(%)				우[]%	좌[]%	
		※ 처방전 발행일 6개월 이내에 시행한 검사를 기준으로 모든 값을 적고, 검사결과지를 첨 부해야 합니다.						
		양측 대상 ※ 9	19세 미만으로 양측 양측 80dB 미만 난청환자 / 영 양측 말소리명료도 50% 이상 /	· 양측 간 순음청력역치 차	이 15dB 이하]]	
(5) 환사상태 5	및 신료 	△ (저방S	기견을 포함하여 구체 ^조	i으로 석습니다)				
위와 같이	보조기기	를 처방합	·니다.					
※ 처방전은 발행일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.							- •	
년						월	일	
요양기관 명칭(요양기관 기호) 담당의사 성명						/11	명 또는 인)	
면허번호							ᆼ 포근 긴)	
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								

유의사항

- 1.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.
- 2. 등록된 장애유형과 관련된 보조기기만 처방해야 합니다.
- 3.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보조기기는 반드시 위 전문과목의 전문의로부터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.
- 4. 장애인 등록 전인 사람에게 급여대상 보조기기를 처방하려는 경우에는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유형으로 장애인 등록이 예상 되는 경우에만 처방전을 발급해야 하며, 발급 시 "[] 장애인 등록 전"의 []에 √ 표시를 합니다.
- ※ 또한, 장애인 등록 전에 구입한 보조기기(장애인 등록 이전 6개월 이내에 구입한 보조기기만 해당합니다)에 대한 급여비 지급은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해당 유형의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작성 방법

- ① 진료받은 사람: 실제 급여를 받는 장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습니다.
- ② 장애구분: 보조기기별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를 적습니다.
- ③ 처방 보조기기: 해당 보조기기의 품목에 √ 표시를 합니다. 보청기의 경우 착용측을 반드시 표시합니다.
- ④ 확인사항: 보청기 검사의 경우 고막 및 바깥귀길 상태의 정상 여부 등 검사결과를 기재한 후 처방해야 하며, 만 4세 이하 영유아 등 말소리 명료도의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⑤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란에 그 사유를 적습니다.
- ⑤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: 보조기기 처방을 위한 장애상태 및 진료소견과 처방품목 내역 등에 대한 소견을 적습니다.